

2 청량음료

特別消費稅가 너무 높다.

李順雨

<吳大七星飲料(株)企劃部長>

1. 清涼飲料란 무엇인가

清涼飲料란 탄산가스 또는 有機酸을 含有하는 飲料를 말한다. (保社部告示 第8號 1977.)

2.14 食品 등의 規格 및 基準)

이 清涼飲料는 탄산가스를 含有하는 炭酸飲料, 果汁과 有機酸을 含有하는 果實飲料, 有機酸을 주성분으로 하는 有機酸飲料로 大別된다.

炭酸飲料의 商業化는 17세기경 독일에서 鎌泉水를 포장판매하기 시작한데서 유래된다. 물론 그 전부터도 약수라 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병에 효능이 있다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5세기경 世宗大王 때부터 鎌泉水를 찾은 기록이 있으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업화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경 미국에서 병뚜껑을 오늘날 널리 사용하고 있는 王冠(철제 王冠)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先進各國에서 는 각종 산업의 고급화에 따라 일반 수도물의 公害性 때문에 水分供給의 主要手段으로서 清

涼飲料를 택하고 있으며 特別消費製品 즉 사치성 제품이 아닌 全然大衆消費手段으로서 기업화 되기에 이른 것이다.

2. 水分供給原으로서의 清涼飲料의 위치

우리 人體는 약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은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成人 一日 2L 이상의 수분공급이 필요하며 이 수분은 모든 新進代謝의 Base (基質)로서 生化學反應의 첫째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 수분의 供給形態가 미국, 유럽 등 先進各國에서는 거의가 有價飲料(돈을 주고 사먹는 飲料)로 되어 있으며 후진국일수록 天然水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 主要國의 有價飲料의 構成比를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1980年度에도 위 構成比는 큰 차가 없는데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清涼飲料 31.3% 중에는 炭酸飲料 24.7%, 果實飲料 0.5%, 有機酸飲料 4.4%로서 대부분이 사이다와 콜라를 비롯한 炭酸飲料로 되어 있다.

표 1. '79 各國의 飲料消費構成比

단위 : %

國別 區分	한국	미국	일본	서독	화한
清涼飲料類	31.3	34.8	27.9	14.7	15.6
牛乳, 水蘿類	16.0	16.7	28.3	15.7	28.4
燒酒, 麥酒等	50.1	22.0	36.1	29.8	19.5
기타	2.6	26.5	7.7	39.8	36.5
計	100	100	100	100	100

※ 기타는 대부분 Coffee 또는 Tea임.

3. 炭酸飲料의 特別消費稅가 너무 높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휘발유, 家電製品, 자동차 등에 관하여 特別消費稅를 下向調整한 바 있는데 물론 輸出製品으로서 또한 一般化된 大衆用品으로서의 자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미국, 유럽등 先進諸國이나 이웃 일본에서도 이 清涼飲料의 大衆性으로 인하여 特別消費稅가 없이 단순한 物品稅로서 他業種

과 큰 차가 없으나(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사치성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特別稅를 붙여 稅率이 높다) 아직 한국만이 38.6%라는 高率의 세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安全하고 값싼 飲料를 마시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인 바 炭酸飲料의 主需要層이 中產層 이하庶民層임을 생각해 보아도 이 같은 高率의 세금은 國民皆稅의 원칙에는 친정하나 약간은 下向調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참고로 각국의 炭酸飲料(清涼飲料)에 대한 稅率을 알아보면 표 2와 같다.

표 2. 清涼飲料에 대한 각국의 稅率

한국	일본	서독	프랑스	미국
특별소비세 20%	物品稅	購買稅	附加稅	各洲마다 다름
방위세 6%	5%	6%	11%	5—10%
부가세 12.6%				
계 38.6%				

표에서 보듯이 先進諸國에서는 5~10% 수준이며 한국은 全體 純粹한 工場渡 값의 38.6%를 세금으로 내야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차구만 비싸다고 불평을 하게 되고 업체는 업체대로 採算性에 苦心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1980년도의 営業實績은 既報道된 바와 같이 근래에 보기드문 冷害現象으로 인하여 急激한 賣出減少를 가져 왔고 清涼飲料의 季節商品의 特異性은 人員使用面에서도 盛需期의 勞動力 確保와 非需期의 解消問題가 自己意思에 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固定費負擔問題에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 飲料產業과 資金支援

飲料產業은 바로 淨水產業이라 볼 수 있다. 특히 清涼飲料는 淨水過程이 Know-How의 전부이며 현재의 한국 실정과 같이 상수도마저 그냥 마시기가 겁이 나는 상황에서는 제품의 품질 維持를 위하여 이 淨水過程이 맛과 냄새를 결정하는 主因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淨水產業인 炭酸飲料가 아직도 사치품목으로 看做되어 特別消費稅 課稅品目으로 指定되어 있고 또한 一體의 資金支援制度가 없다. 農產物 價格安定을 위한 農安基金, 機械工業 育成을 위한 國民投資基金, 輸出產業을 위한 輸出進興資金 등 長期低利의 資金

支援制度가 있으나 庶民大衆이 주로 마시는 炭酸飲料가 資金融資 制限業種이며 38.6%라는 高率의 세금을 내야만 하다니 租稅平衡의 원칙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5. 結論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휘발유,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의 大衆性과 景氣振作을 위하여 稅率을 調整했듯이 이 炭酸飲料도 국민 전체가 마시는 有價飲料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大衆製品인 만큼 점차 그 폭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가야 할 것이며 良質의水分供給源이라는 국민 보건의 차원에서 급할 때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資金支援制度를 마련하여 막힌 숨통을 트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리홍식
건강가족